

세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대상 및 요건의 판단기준 - 출국금지처분의 취소소송 판례: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출국금지 대상은 '형사재판에 계속 중이거나,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형사재판 중에도 출국의 필요성에 때문에 출국금지취소판결을 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세금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입니다. 조세 사안에 대한 출국 금지처분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판단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해당한다.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키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미납 세금을 자진납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원리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유무에 관한 판단에서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므로,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그간의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

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출국금지로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그로 인한 기본권 제한에 따라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쟁점

가. 고액의 조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의 적법여부에 있어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통상 체납자의 국·내외 은닉 재산 보유 여부가 주된 쟁점입니다. 체납자의 국·내외 은닉 재산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그리고 사실상 체납자 소유라고 볼 여지가 있는 차명 재산도 해당됩니다.

만약 체납자가 이러한 은닉재산을 출국금지처분 이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사실이 확인

된다면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유출시켰다는 점이 확인되어도, 재산의 해외 도피가 아닌 영업상의 필요 또는 자녀 교육을 위한 비용 등 정당한 지출이었음을 입증한다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나. 조세 미납자의 신병을 확보하거나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여 심리적 압박을 통한 조세 회수 금지

체납자들 중 출국금지취소소송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업상 필히 출국할 사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납자는 소송에서 사업상 필히 출국할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과 함께 귀국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한 사정으로 급히 출국해야 할 경우에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 기타

대법원은 조세 체납의 경위, 조세 체납자의 연령과 직업, 경제적 활동과 수입 정도 및 재산상태, 조세 납부 실적 및 조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 종전에 출국했던 이력과 목적·기간·소요 자금의 정도, 가족관계 및 가족의 생활정도·재산상태 등을 두루 고려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 실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출국이력과 가족관계 그리고 조세 납부 실적입니다.

조세납부실적은 조세 납부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히 임했는지를 알 수 있을 기본적인 척도로서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실무상 체납자가 출국금지요청기관(국세청 등)에게 조세를 분납하겠다는 취지를 밝히면 출국금지요청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책과제,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